

고 많았습니다.

委員 여러분! 그러면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.

(15時33分 會議中止)

(15時45分 繼續開議)

○委員長 崔震斗 委員 여러분!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.

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.

다음은 建築課長 나오셔서 報告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建築課長 李學雨 建築課長 李學雨입니다.

저희 建築課는 非豫算 部署이면서 民願業務를 주로 하는 部署입니다.

그래서 年初에 특별한 民願에 대한 어떤 計劃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建築行政과 관련되는 몇 가지 業務를 93年度 計劃을 세운 業務 중심으로 열 네가지 제목과 알고 계신 바와 같이 建築行政으로 인한 다수인 관련 민원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.

그래서 주요한 다수 관련 민원 처리 사항 등으로 報告 말씀 드리겠습니다.

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제정

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

가. 추진실적

- 입법예고: '93. 2. 12 (각 실, 과, 동 및 관련단체)
- 구의회 의결: '93. 4. 14
- 공포시행: '93. 5. 31

나. 금후계획

- 건축규칙 제정

- 기간: 조례시행일부터 6월이내('93. 12 월말)

- 규칙 제정대상

-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방법
절차 및 조정공사비 예탁 등 5종
- 자료발체 및 초안작성('93. 7~8월)
- 입법예고: 9월
- 공 포: 10월
- 시 행: 11월

허가대상건축물 국기꽃이 설치 확대 권장

건축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기게양대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에 국기꽃이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주민 애국심 고취

- 근거법령-건축법 시행령 제102조
- 대상건물
 - 상업지역(중심, 일반, 유통, 근린)
 - 미관지구 또는 폭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2층 이상 건축물

가. 추진실적

- 건축허가 총 건수: 307건
- 허가조건 부여: 54건
- 사용검사시 설치 확인: 54건

나. 금후계획

- 건축허가 신청시 도면에 설치 위치 표기
- 사용검사시 설치 확인

다. 기대효과

- 국기게양대 꽃이 설치로 보다 국기게양용이
- 주민 애국심 고취에 일조

대형 건축물의 외벽 미화

-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분위기 조성.
- 주변과의 조화있는 건축물 유도

- 대상건물
 -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
 - 노폭 2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5층 이상
 - 미관지구내 1000제곱미터 초과 5층 이상
- 내 용
 - 그래픽(벽화), 회화용 타일
 - 인근건물과 조화있는 색채사용 (아파트대상)

가. 추진실적

- 총 추진 건수 : 43건
- 아파트 : 당리동 산29번지
해성건설 이광호 등 7건
- 대형건물 : 하단동 607-7번지
송병규 등 36건

나. 금후계획

- 건축심의시 활성화

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

-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하천을 복개하여 진입도로 개설
- 대지 조성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분양완료

- 위 치 : 당리동 산29번지 등 5필지
- 사업주체 : 동구 초량동 1163-5번지
(주)해성건설 대표 이광호
- 규 모 : 10~25층 4동 423세대
 - 부지면적 : 12,456제곱미터
 - 건축연면적 : 46,782.19제곱미터
- 승인일자 : '93. 1. 29

주택건설 사업계획(안) 처리

일반주거지역 및 일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형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단식으로 부지조성

가. 감천 거안주택 심의

- 위 치 : 감천동 181-1번지 등 5필지
- 신청인 : 서구 동대신동 3가 68-16번지
(주)거안주택 대표 허필이
- 규 모 : 25층 2동 375세대
 - 부지면적 : 11,135제곱미터
 - 건축연면적 : 35,847.39제곱미터
- 심의처리일자 : '93. 5. 12

나. 당리 자은주택 심의

- 위 치 : 당리동 531번지 등 3필지
- 신청인 : 동래구 복천동 280번지
(주)자은주택 대표 박강길
- 규 모 : 11층 1동 47세대
 - 부지면적 : 1,545제곱미터
 - 건축연면적 : 4,343.25제곱미터
- 심의처리일자 : '93. 5. 12

주택건설 사업장 안전관리

- 해방기 안전점검, 우수기 대비 재해점검, 산재예방을 위한 점검 등 일제점검 실시
- 품질시험 확행 여부 등 현장관리 점검을 수시로 실시

가. 대상사업장 : 장림 보양건설 사업장 등 23개소

나. 일제점검회수 : 3회

- 93. 2. 28~93. 3. 5
- 93. 4. 29~93. 5. 4
- 93. 5. 25~93. 5. 29

다. 점검내용

- 공사장 주변 안전에 관한 사항
- 재해위험 요인 정비
- 낙하물 방지망, 가설 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
-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
라. 점검결과

- 현지시정 : 17개소
- 시정지시 : 6개소(시정완료)

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

-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89. 4. 1 임시조치법(한시법 1992. 12. 31까지) 제정
- 건축법 등 각종 법규에 저촉되어 건축행위 불가능한 불량주택의 주거환경 개선

가. 추진현황

지구명	개선계획 고시일	주 택 수 (계획/실적)			용 자 (백만원)		
		계	기량	양성화	계	재특 자금	국민 기금
계		3,186/1,085	804/436	2,382/649	1,570	870	700
장림1	91.3.5	821/219	51/110	770/109	304	170	134
장림2	"	640/163	268/ 65	372/ 98	352	230	122
신평1	"	1,628/683	417/249	1,211/434	636	300	336
신평2	92.10.24	97/ 20	68/ 12	29/ 8	278	170	108

나. 향후계획

- 감천동 1개지구 지정 사업시행
 - 93. 7. 31 : 지구지정 입안신청
 - 93. 12. 31 : 지구지정 고시
 - 94. 1~94. 4 : 개선계획수립
 - 94. 11. 31 : 개선계획고시
 - 94. 12. 20 : 사업시행

민 원 현 황

발생건수 : 6건(처리 3, 처리중 : 3)

가. 장림 동원개발 사업장

- 위 치 : 장림동 산49번지 등 6필지
- 사업주체 : 동원개발(주) 장복만
- 진 정 인 : 장림동 28-1번지 김정수 등 11인
- 진정요지 : 사업시행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 대책강구 요망
- 조치결과 : 법상 적정한 사항 이해관계인간의 대화로 민원 해소

나. 감천 남성종합건설

- 위 치 : 감천동 315-2번지 등 6필지
- 사업주체 : (주)남성종합건설 정규출
- 진 정 인 : 감천동 315-22번지 조민호 등 22인
- 진정요지 :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생활 지장 초래
- 조치사항 : 법상 적정한 사항 사업자에게 대책강구 권고 이해관계인과 대화 진행중

다. 괴정 동해1차 사업장

- 위 치 : 괴정동 1964-1번지 등 23필지
- 사업주체 : 동해산업(주) 최설립
- 진 정 인 : 괴정동 1064-1번지 신자유동해 아파트 2-106 유환기 등 52인
- 진정요지 : 사업자의 부도발생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시공자인 자유건설에서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
- 조치사항 : 민원대책회의 개최 사업주체, 시공사, 입주자가 협의중

라. 괴정 하이츠 사업장

- 위 치 : 괴정동 357-34번지 등 9필지
- 사업주체 : 하이츠건설(주) 김차련
- 진 정 인 : 괴정동 351-10번지 신일언립
207호 신윤범 등 45인
- 진정요지 : 공사장 차량통행으로 인한 거
주 건축물 피해발생 및 주거
생활 지장 초래
- 조치사항 : 이해관계인과 대화로 민원해
소

마. 감천 화홍주택 사업장

- 위 치 : 감천동 16-939번지
- 사업주체 : (주) 화홍주택 정재명
- 진 정 인 : 감천동 16-939번지 서두정 등
105인
- 진정요지 : 사업시행시 일조, 조망 등 주
거생활 지장초래 예상됨.
- 조치사항 : 이해관계인 대화 중재 협의
중

바. 다대 우신아파트 사업장

- 위 치 : 다대동 960번지
- 사업주체 : 우신종합건설(주) 강신택
- 진 정 인 : 다대 960번지 우신 임대아파트
방원호 등 134인
- 진정요지 :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따
른 부당사항 시정요망
- 조치사항 : 수습차레의 대책회의 및 중재
결과 이해관계인 합의 해결

○建築課長 李學雨 이상으로 業務와 관련한
報告를 마치고자 합니다.

感謝합니다.

○委員長 崔震斗 다음은 建築課 所管에 대하여
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孫判岩委員 委員長!

○委員長 崔震斗 孫判岩 委員 質疑해 주시기
바랍니다.

○孫判岩委員 孫判岩 委員입니다.

建築課長님 業務報告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
하셨습니다.

그런데 누누이 우리 都市委員會에서도 얘기
했고 本會議에서도 質問을 한 것으로 제가 기
억합니다마는 民願現況에 보면 여섯 件 中에 세
件은 처리가 되고 세 件은 處理가 안된 事項을
보면 住居地內에 고층화 되는 建物들이 들어선
다고 해서 그것이 法으로 하등에 위법이 안된
다고 했을 때 일어나는 民願이 여섯 件이란 말
이죠. 그러면 長林 동원개발 사업장이라든지 나
머지 여섯 件 中에 法으로는 하등에 違法된 事
項이 없는데 民願이 發生했다 말이죠.

이것을 순수하게 區廳에서 중재역할을 해서
소위 말해서 너 얼마만큼 양보하고 너 얼마만큼
양보를 해라 하는 그것뿐입니까, 아니면 이것은
建築法 施行令 몇 條에 의해서 위법이니 이것을
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 하는 사실이 있습
니까?

民願 여섯 件이 建築法 施行令에 위법된 사
실이 있습니까? 答辯해 주십시오.

○建築課長 李學雨 이 여섯 件 가운데에도 아까
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조권, 조망권, 가시권 이
런 事項 등이 되겠습니다.

이 民願을 접하고 現場을 조사를 해서 法이
보호하는 범위내에서 法이 規制하는 범위 내에서
위법사항은 전혀 發生되지 않습니다.

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방금 委員님이 말
씀한 行政을 遂行함에 있어 그것이 더더욱 어
려운 問題입니다.

그래서 民意를 무시하는 입장은 아닙니다.

民意도 보호는 돼야 되겠는데 保護돼야 될
法的인 뒷받침이 法이 주민 편에 설 수 있는